

피해자 카운슬링(심리상담) 제도

범죄 피해로 대단히 무거운 스트레스에 처하면 불면, 식욕부진, 소리 등에 과잉 반응 등 심신에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임상심리사에게 카운슬링(심리상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원원 등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피해자 연락제도

경찰에서는 뺑소니사건, 교통사고(사망, 한달이상의 상해, 위험운전치사상등)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 교통사고, 사건 상대방에 관한 것
- 교통사고, 사건 상대방의 형사처분에 관한 것
- 교통사고, 사건 상대방의 자동차운전면허처분상황
- 교통사고, 사건의 상담창구

에 대해서 연락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경찰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방법지도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5. 범죄 피해 급부제도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중상 혹은 중병을 입은 피해자,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나라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제한에 대해서>

-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범죄 피해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는 급부금 전부 혹은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교통사고 사건 상담창구

피해 상담창구(일본어)

경찰 상담창구	
경찰 안전 상담 현민 안전 상담센터	018-864-9110 (혹은 #9110)
아키타현경찰본부 피해자지원실	018-863-1111
HP http://www.police.pref.akita.jp/index.html (영어 페이지 있음)	

교통사고 상담	
생활센터 교통사고상담	018-836-7804 (혹은 836-7805)
상담접수시간: 월~금 9:00~17:00 토, 일요일, 축일은 휴일입니다.	
HP http://www.akita.lg.jp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사단법인 아키타 피해자 지원센터	프리 다이얼 0120-62-8010
상담접수시간: 월~금 10:00~16:00	
HP http://www.av.s.or.jp	

외국어 상담창구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AIA) 외국어 전화상담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AIA)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을 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는 것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주 목요일 13:00~15:00 18:00~20:00 (축일, 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 대응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018-864-1183 ※상기 상담일시 이외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당한 분들께 한국어판

이 인쇄물은 범죄 피해를 본 분들께 형사 수속의 흐름과 경찰이 하는 조사 혹은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목>

1. 형사 수속 흐름
2. 경찰 수속~조사 협력 부탁~
3. 검찰청·법원 수속
4. 경찰에 의한 피해자 지원제도
5. 범죄 피해 급부제도
6. 각종 상담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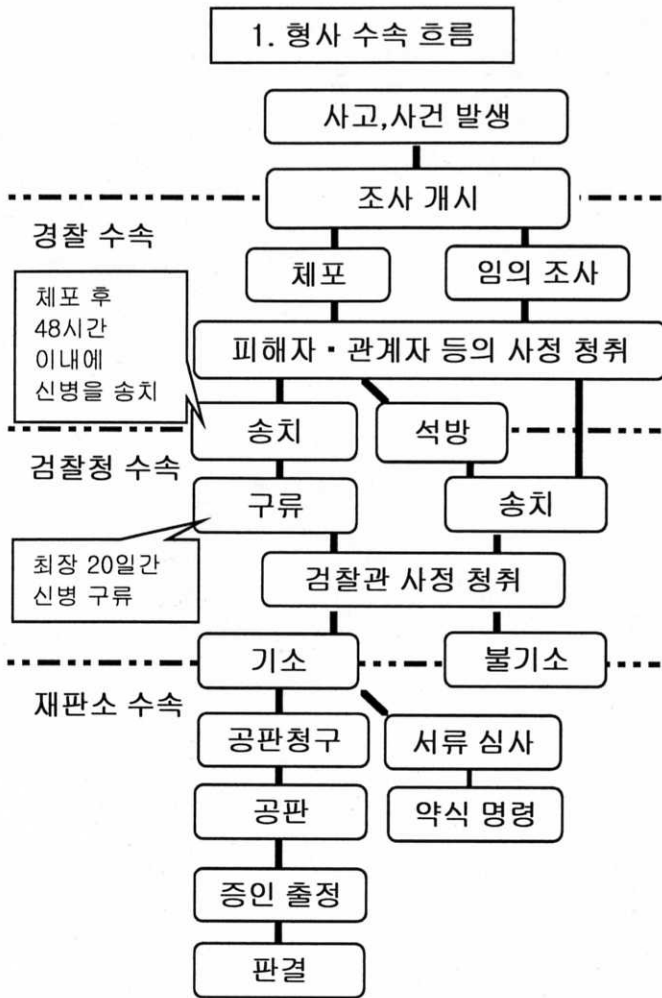
당신의 사고(사건)은 _____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_____ 과 _____ 입니다.
전화번호: _____ (내선 _____)

피해자 연락은 _____ 경찰서 _____ 과 _____ 가 담당합니다.
전화번호: _____ (내선 _____)

아키타현 경찰본부

1. 형사 수속 흐름



※ 범인이 소년(20세 미만)인 경우는 수속이 달라집니다.

형사 수속이란, 범인이나 범죄를 명백하게 밝히고 형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수속은 조사·기소·공판 3가지로 나뉩니다.
 조사: 사건을 해결하는 활동
 기소: 피의자를 재판에 거는 것 (걸지 않는 경우는 불기소)

공판: 재판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각각의 단계에서 형사 수속 상 필요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경찰 수속 ~조사 협력 부탁~

사건을 해결하려면 피해자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부담될 때가 있지만,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① 사정 청취
 범행당시 상황이나 범인의 특징·모습 등을 자세히 질문합니다.

남성 경찰관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는 여성 경찰관이 담당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② 증거품 제출
 범죄를 증명하고자 증거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로서 필요가 없다면 반환해드립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증거품이라도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반환해드릴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는 증거품은 제출 시에 「포기」 수속을

③ 실황 판별 등에 동석

범행 현장 상황을 재연하는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범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사실을 명백히 밝히거나 범죄를 증명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실황 판별 등에 불안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상담해주시시오.

④ 검시·해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을 특정하고자 검시나 해부를 합니다.

3. 검찰청·법원 수속

검찰관에 의한 사정 청취

검찰관은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재차 사정을 묻게 됩니다. 사정 청취는 중요하므로 경찰관과 같은 것을 질문받더라도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증언

범죄를 입증하고자 공판에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증인 신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언해 주실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검찰관, 또는 법원에 상담해주시시오.

피해자 참가제도

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등의 피해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참가인이란 소송수속상 입장으로 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검찰관, 또는 법원에 상담해주시시오.

4. 경찰에 의한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 지원원(員) 제도

경찰에서는 살인, 상해, 성범죄 등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는 따로 지정된 경찰 직원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원은

- 병원 수배와 시중
- 사정 청취 시 시중
- 실황 판별 시 시중
- 자택 등으로 마중 혹은 전송
- 걱정거리 상담(신변 돌보기 등)
- 다른 지원제도나 상담기관 등 정보 제공 등을 하고, 피해를 본 본인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